

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8년 3월
제74회 임시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3월 3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제출
및제안자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3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74회 서구의회(임사회) 회기중

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(1998년 3월 25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< 제안설명자 : 지방세과장 정광량 >

가. 제안사유

□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

○ 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이며 지역주민의 공공시설이므로 터미널
경영지원을 통한 시설 운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'94년 3차
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내무부에 종합토지세 부담 경감방안
을 강구토록 이첩

○ 내무부에서 '95년 시행 지방세 감면조례개정 준칙안 시달
('94.11.11)

○ 내무부에서 '98년 시행 지방세 감면조례개정 준칙안 시달
('97.10.10)

- 대중교통을 지원하여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부응하고 타지역과의 균형을 위해 구세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□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

-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< 전문위원 박종근 >

-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것이며
- 지방세 감면은 95년부터 시행 조례개정 준칙안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었으나 그동안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부지용도에 대한 토지이용 여부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내무부 세재 13400-337(97.10.10)에 의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조례 개정안이 일괄허가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시행한 내용이며,

-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시주민이 필요한 공공시설물로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량을 줄이고 지역기업의 경영지원을 통하여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구세감면은 타구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며,
- 지방세는 자체단체 행정을 수행하는데 제공되는 필연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지역사업체는 재정에 도움이 되는 막대한 재화를 주기 때문에 경영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세수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 면밀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임.

첨부 • 여객자동차터미널법
• 광천터미널 지방세 과세 관련현황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사항 : 없음

○ 여객자동차터미널법

제2조(정의)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3. “여객자동차터미널”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종류)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: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외의 여객자동차 터미널
- 2.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: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

제6조(면허의 기준)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1.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가 당해 지역 자동차운송망의 중심지로서 여객의 이용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
- 2. 당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규모가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운송량에 적합할 것
- 3.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계획과 능력을 가질 것
- 4. 기타 당해 사업의 개시가 공익상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것일 것.

광천종합터미널 지방세 과세관련 현황

□ 토지 현황

(단위 : m²)

계	터미널	백화점	주차장	도로	비고
100,710.0 (30,465평)	79,438.8 (24,030평)	13,619.0 (4,120평)	2,571.2 (778평)	5,081.0 (1,537평)	

□ 종합토지세 부과현황 ('95~'97)

○ 과세 : 터미널, 백화점, 주차장 ○ 비과세 : 도로 (단위 : 천원)

과세연도	계	종합토지세	도시계획세	교육세	농특세
'95	1,789,162	1,218,130	145,258	243,626	182,148
'96	1,830,621	1,245,164	150,269	249,032	186,156
'97	2,316,355	1,579,803	184,268	315,960	236,324

□ 조례개정후 납부 예상세액 ('98년)

○ 과세 : 터미널(50%), 백화점(100%), 주차장(100%) (단위 : 천원)

계	종합토지세	도시계획세	교육세	농특세	비고
1,259,524	789,901	193,481	157,980	118,162	

□ 조례개정후 감면 예상세액 ('98년)

○ 감면 : 터미널(50%) (단위 : 천원)

계	종합토지세	도시계획세	교육세	농특세	비고
1,172,648	868,892	0	173,778	129,978	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조례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 (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)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정안
	(신 설)	제12조의2(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)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